
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9.

발의자 : 윤호중·최혁진·이학영
김원이·소병훈·김영배
조승래·송재봉·양부남
임호선·박정현·이해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·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,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·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새로 「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459호) 및 「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45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기부금품의 모집 ·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기부금품의 모집 ·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1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-----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「공의사업 활성화 및 공의 위원회 설치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</u></p>